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제정 2005· 7· 7 조례 제 574호
개정 2008· 1· 10 조례 제 701호
개정 2008· 7· 25 조례 제 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 12· 29 조례 제 916호
일부개정 2013· 10· 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 9· 25 조례 제1159호
일부개정 2017· 12· 28 조례 제1368호
일부개정 2018· 3· 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 12· 13 조례 제1555호
일부개정 2021· 9· 28 조례 제1751호
일부개정 2023· 3· 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3· 3· 14 조례 제19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제2조(설치종목 등)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설치하는 세부종목(전국체전 정식종목에 한정한다) 및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9· 28]

제3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부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되며 부장은 체육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8· 1· 10, 2008· 7· 25, 2013· 10· 1, 2018· 3· 28, 2023· 3· 14>

③ 단원은 감독·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분한다.

제4조(임용) ① 단원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② 단원 중 지도자의 신규 임용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지도자의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③ 단원 중 선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입된 우수선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④ 단원의 임용기간은 제5조에 따른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연도의 입상성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 ⑥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3·14]

제5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된다. <개정 2008·1·10, 2008·7·25, 2013·10·1, 2018·3·28, 2019·12·13, 2023·3·6>
- ④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0, 2011·12·29>
 -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 심의
 -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 4.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가 우수한 단원의 정년 연장
 -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1·9·28>
-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 1. 개최일시
 -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9·25>

③ 부장은 선수단을 지도·감독한다.

④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한다. <개정 2011·12·29>

제7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선수는 전국 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8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자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사람

제9조(겸직 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이천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천시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가 요청하여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8]

제10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9·12·1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종목의 선수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0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5 조례 제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 <2011·12·29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 <2015·9·25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부터 ㉑ 까지 생략

부칙 <2019·12·13 조례 제1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최초임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남은 단원의 봉급은 해당 계약 종료일까지 기존 조례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다.

부칙 <2021·9·28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체육지원센터소장”을 “행정지원과장,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⑩ 부터 ④① 까지 생략

부칙 <2023·3·14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